

감사위원 및 감사의 자격요건_개관 및 전문성

김 유 경 상무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리더

youkyoungkim@kr.kpmg.com

1. 감사위원 및 감사의 자격요건 개관

감사위원회와 감사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여 투명한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나아가 주주권의 보호 및 자본시장 거래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경영진을 견제하고 조언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역할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고위 경영자나 공직자와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요건의 충족이 감사위원이나 감사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감사위원 및 감사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으로서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윤리성 등에 대해 살펴본다.

표 1 | 감사위원 및 감사의 자격요건¹⁾

독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 및 감사의 독립성은 상법 상 결격사유를 통해 규율되고 있는데, 최대주주 본인 및 그 친인척, 회사와 기존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및 감사가 될 수 없음 • 법률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 감사위원 및 감사는 감독 대상과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고, 혈연·학연·지연 등 연고관계도 없어야 함 • 또한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 대해 강도 높은 내부감사를 수행하거나 조사 후 징계조치를 취하더라도 감사위원 및 감사의 신분 및 보수 관련 불이익이 없어야 함 • 감사업무 지원조직에 대한 인사권은 감사(위원)가 보유해야 함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로 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은 감사는 해당되지 않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음 •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지식 뿐 아니라 회사가 속한 업종 동향, 거시경제 흐름에 대한 직관, 상법 등 관련 법률 소양,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같은 내부감사 실무요령 등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속적인 전문지식 개발을 위해 감사위원 및 감사는 감사업무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회사의 시간적·금전적 지원도 필요함 • 경영현안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의 중요한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확보되어야 함 • 감사위원과 감사의 실무를 지원할 수 있는 내부감사보조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전문분야, 경력, 성별 등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과 창의적 해결방안 도출의 가능성을 높임 • 국내에는 아직 감사위원회의 다양성을 법령 또는 기준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영국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집단사고를 방지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이사회 내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기업의 경우 조직 내 다양성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마련되어 있음 • 다수의 미국 기업이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을 고려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다양성을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감사위원들은 관료나 학계 출신으로 편중되어 있음	
윤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여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고 있음 • 감사위원 및 감사는 직무 수행 시 실정법 뿐 아니라 보편적 도덕과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정직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함 • 직무 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지양하고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함

본고에서는 감사와 감사위원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다음 호에서는 독립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감사위원 및 감사의 전문성 관련 국내외 규정

국내에서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된 조항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²⁾

1) 직무 관련 지식 보유 및 개발

상법상 엄격 감사위원회³⁾ 조항, 자본시장법, 금융사 지배구조법,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모두 공통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2년 제정된 미국의 사베인즈-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에서도 감사위원회 내 재무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

상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 5년 이상인 사람 등을 의미한다.

더불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사외감사위원을 포함한 사외이사의 지속적인 지식 개발과 관련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 모범규준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이외의 감사위원이나 감사의 경우에도, 감사업무의 특수성과 엄중한 법적 책임을 고려할 때, 감사위원과 감사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감사위원과 감사의 자격요건 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조직구성의 특성 상, 3인 이상 조직인 감사위원회에 비해 1인 기구인 감사는 다양성이라는 자격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감사위원회에 적용되는 법적 자격요건으로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인 이상 보유의 의무도 상법 상 기구인 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2) 규정 원문은 본고 내 별첨 참고
 3)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감사위원회

2) 회사 내부 지원

회사가 자체적으로 감사위원 및 감사를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① 사내 감사업무 지원조직(이하 ‘내부감사보조기구’)의 설치, ② 적극적인 경영정보 제공의 두 가지가 있는데, 국내 법규 중에서는 금융업에 대해서만 관련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먼저 감사업무 지원조직에 대해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감사보조조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감사기구의 실무를 보좌하는 전담조직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한편, 감사위원 및 감사의 경영정보 접근권한과 관련하여,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감사위원 및 감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금융회사가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감사위원 및 감사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모범규준 역시 유사하게, 감사위원회의 사내 모든 정보 제공 요구권과 경영진이 중요한 경영정보를 감사위원에게 공유해야 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3) 외부 자문 비용 지원

감사기구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비용 지원 규정은, 다양한 영역에 대한 감독 책임을 부여 받은 감사위원과 감사에게 특정 영역의 전문성 부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보완하도록 해법을 제시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상 감사위원회 자문 비용 지원 내용은 1999년 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조항에 포함되어 신설되었고, 감사를 위한 외부 자문 비용 지원은 2011년 상법 개정 때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법 및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감사위원 및 감사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때 회사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규정을 마련 및 공시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대개 외부 자문 비용을 회사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도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회계·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외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규정의 특이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 기업 감사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재무정보에 대한 기본적 이해능력(Financial Literacy)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내부통제시스템 평가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내부감사보조기구(internal audit function)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3. 감사위원 및 감사 전문성 관련 현황

감사위원 및 감사의 출신을 기준으로 영역 별 전문성 보유 여부를 분석하면, 국내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관료 및 학계 출신인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기업경영에 관한 경험이나 회계·재무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다. 반면 미국 감사위원회는 타 회사 前 CEO 등 재계 출신이 많아 대개

경영실무에 대한 이해를 갖춘 자가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CEO스코어가 2015년에 국내 30대 그룹 187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609명과 미국 Fortune지가 선정한 상위 100대 기업 사외이사 815명의 출신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한국은 관료, 미국은 재계 출신 사외이사를 가장 많이 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30대 그룹 사외이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료 출신은 235명으로 38.6%에 달했고,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분야는 186명을 배출한 학계로 30.5%를 차지했다. 반면, 국내 사외이사들 중 재계 인사는 97명으로 15.9%에 불과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Fortune 선정 미국 100대 기업의 사외이사 중 재계 출신은 74.0%에 달했다.⁴⁾

한편, 최근 수조원 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대우조선해양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해 회계감독에 책임이 있는 내부 조직에 회계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의 2015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조직으로 분류되는 감사위원회·이사회·회계처리부서·전산운영부서·자금운영부서 내에 공인회계사가 단 1명도 없었다.⁵⁾ 이와는 달리 미국 S&P 500 기업 감사위원장 중 회계사, CFO 등 회계 및 재무 전문가 출신은 2014년 기준 37%에 달했다.⁶⁾

4. 결론

국내 법규를 보면, 감사위원 선임 시점에는 전문성과 관련한 법적 최소요구수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이후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위한 내부감사보조기구나 교육 관련 조항은 미흡한 편이다. 예컨대 내부감사보조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만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이외에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사외이사 교육을 권고하고 있긴 하지만 감사(위원)를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에 관해서는 국내 법규 중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인 이상 요건이 적용되지만, 감사에 대해서는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전문성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을 대변하듯, 국내에서는 감사위원과 감사를 위한 사내외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복잡하고 방대한 감사업무를 상시적으로 지원해 줄 내부감사보조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및 일부 상장기업⁷⁾에 한정되어 있다. 설사 있다 해도 전담조직이 아니라 재무부서, 임원 비서실 등 다른 주 업무가 있는 조직이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게 사내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적으로만 부여하는 회사도 적지 않다.

감사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이다. 감사위원 및 감사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감이 확산되어 감사기구 내 회계 및 재무 전문가 비중 확대, 회사의 적극적인 감사업무 관련 교육 지원, 사내 감사업무지원 전담조직 마련이 보편화되기를 희망한다.

4) 현대경제신문, “韓 30대그룹 관료 출신 사외이사 39%”, 2015.8.26.

5) 머니투데이, “수조원 분식 논란, 대우조선 회계부서엔 회계사가 없다”, 2016.05.19.

6) Spencer Stuart, 「2014 Spencer Stuart Board Index」

7) 한국감사협회 「감사저널」 2014 신년호 “감사보조조직 설치의 필요성”에서는 국내 상장사 중 내부감사보조기구 설치 비율이 61% 수준이며, 이 중 전담직원이 없는 경우가 7%정도라고 함

[별첨] 감사기구 전문성 관련 국내 법규

표 2 | 전문지식 보유 및 개발 관련 규정

<p>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p>
<p>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② 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p> <p>3.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p> <p>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p>
<p>자본시장법 제2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p>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p>
<p>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감사위원회) ②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3. 주권상장법인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4.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가. 국가</p> <p>나. 한국은행</p> <p>다.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p> <p>라.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p> <p>마. 다목 및 라목 외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p> <p>바.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관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제외한다)</p> <p>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p> <p>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법인등</p>
<p>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p>
<p>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0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이하 이 조에서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p>
<p>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p> <p>1.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p>

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29조(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① 금융회사는 신입 사외이사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아직 제정되지 않음

표 3 | 외부 자문 비용 지원 관련 규정

상법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 모범규준 제28조(사외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금융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등의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회계·경영 관련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표 4 | 회사 내부 지원 관련 규정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②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감사위원" 또는 "감사"로 본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8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금융회사 모범규준 제37조(감사위원회의 권한 등)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요구 (생략)
②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모범규준 제38조(감사보조조직) ① 감사위원회에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을 둔다.
② 감사보조조직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③ 금융회사는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으로 감사보조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